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32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황운하 · 차규근 · 백선희
정혜경 · 박은정 · 전종덕
윤종오 · 손 술 · 김재원
용혜인 · 신장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등 피해호소 및 부패 및 비위 제보 등 정당한 공익제보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0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07條(名譽毀損) ① <u>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u></p> <p>② (생 략)</p> <p>第309條(出版物等に 依한 名譽毀損) ① <u>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u></p> <p>② <u>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第310條(違法性的 阻却) 第307條 <u>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u></p>	<p>第307條(名譽毀損) <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p>第309條(出版物等に 依한 名譽毀損) <삭 제></p> <p>② <u>사람을 비방할 目的으로 新聞,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依하여 허위의 事實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者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삭 제></p>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